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1년 검찰**

발행일 | 2009년 3월 25일

제작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목차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1년 검찰

서문	3
1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인사	5
2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주요 수사	26
3부 이명박 정부 1년 주요 일지	69
4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평가 / 하태훈, 서보학	79

서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여 년이 지났다. 사회 각 부문별로 기억하고 평가할 일들이 매우 많았던 1년이었지만, 검찰분야도 기억할 일들이 많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검찰개혁을 위해 여러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사건에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캠페인과 제도개선활동을 벌여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검찰개혁활동에 힘입어,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1999년부터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고 2003년부터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가능해졌다. 이른바 지휘부의 명령대로 움직여야만 했던 검사동일체 원칙도 지난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폐기되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1997년에는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근무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 뒤를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집권세력은 검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애초 약속을 충실히 지켜 검찰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법원, 검찰, 변호사 양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검찰분야에서도 형사소송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특히 재정신청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런 제도환경의 변화와 집권세력의 태도 변화, 그리고 검찰의 사건 처리에 있어 국민적 불신을 살만한 큰 사건이 없었던 상황 등과 맞물려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명박 정부 집권 전까지는 나쁜 편은 아니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검찰감시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는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개선된 평가와 낮아진 검찰감시 요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거치면서 거의 180도 바뀌었다.

지난 1년 검찰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조직뿐만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던 방송매체, 그리고 힘없는 일반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도 범률적으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사, 처벌을 시도했다. 그리고 검찰은 대대적인 부패사정 수사를 벌였는데, 순수한 부정부패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넘어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권을 이용하였고 결과면에서도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검찰은 과거의 ‘정치검찰’로 되돌아가버렸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의지와 그것이 가능한 검찰을 둘러싼 제도환경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된 집단이 되었고 검찰의 핵심세력, 특히 검찰지휘부를 차지하는 간부들의 정치,정책적 판단이 집권 세력의 요구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이 집권세력의 통치 도구로 활용되거나 국민 다수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개선방안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잘못을 매순간 감시하며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기록하여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기록은 검찰조직 구성원들에게 역사적 책임과 평가의 무게를 인식하게 하는 작은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감시와 개혁의 요구가 폭발했고 또 앞으로 계속될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검찰의 행보를 기록하고자 하며, 그 첫 작업으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보고서가 관찰한 시기는 2008년 2월즈음부터 2009년 2월즈음까지다.

보고서는 1년동안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던 인물들이 누군지를 기록하는 ‘검찰 인사’ 편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의 개요와 담당자, 처리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주요 사건’ 편, 1년 동안 검찰(법무부 포함)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검찰법무 주요 일지’편, 그리고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을 평가한 ‘평가’ 편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비록 검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기록하지 못하고, 또 기록한 부문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한 주요 사건과 사안들이 적지 않지만, 이 기록들이 모여 검찰감시와 개혁의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비롯해 연간 단위로 보고서 발행을 계속 할 것이다.

1부. 이명박정부 1년 검찰 인사

1. 2008년 19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검찰(법무부포함) 조직의 간부직책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19개가 우선 손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 대검차장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고등검사장이다.(검찰청법 13조 등)
- 법무부차관
- 서울중앙지검장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형사사건(공안사건 포함)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 대검 중수부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
- 대검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법무부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종합 및 조정, 법질서 바로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8조)
- 서울중앙지검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판1,2부, 총무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1,2부 및 외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대검수사기획관 : 대검 중앙수사부에 속해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대검 중수부장을 보좌하다.
- 대검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범죄정보기획관 :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부정부패사법 정보, 경제질서저해사법 정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이상 범죄정보1담당관 소관),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이상 범죄정보2담당관 소관)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 대검중수1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중수2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공안1과장 :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공안2과장 :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이들 19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2009년의 경우는 2009년 2월말 현재

기준). 이들 19개 직책중, 2008년 경우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은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을 맡았다 (2009년 2월 기준으로는 법무부장관,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1과장을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 맡고 있음)

표 1. 19개 주요 직책 인사						
직책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기수	이전 근무처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년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2008년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법무연수원장
2009년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대검찰청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						
2008년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대고고검장
2009년	문성우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차관
법무부차관						
2008년	문성우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검찰국장
2009년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대구고검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2008년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10	광주고검장
2009년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	수원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대검기획조정부장
2009년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법무부법무실장
대검중수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청주지검장
2009년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기획조정부장
대검공안부장						
2008년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울산지검장
2009년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울산지검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08년	소병철	전남	광주일고	서울대	15	대전지검차장

		순천		법대		
2009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중앙3차장
서울중앙지검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15	수원지검1차장
2009년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1차장
서울중앙지검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2차장
2009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인천지검2차장
2009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특수1부 장
2009년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17	법무부대변인
대검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형사1부 장
2009년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대변인
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부산고검검사
2009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범죄정보기 획관
대검중앙수사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기획 과장
2009년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금융조 세조사2부장
대검중앙수사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인천지검특수부 장
2009년	이석환	광주	광주 승일고	고려대 법대	21	해남지청장
대검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공안2과장
2009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공안2과장
대검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인천지검부부장(법제처 파견)
2009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피해자인권 과장

2. 2008년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고등검사장급 이상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은 11명중 3명으로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이었음.

검사장급(고등검사장급 제외)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은 41명중 8명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이었음

표 2.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2008년 직책	성 명	출 생 지	출신고 교	출신대 학	연수원 기수	이전근무처	2009년 현 재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문성우	광주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검찰국 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김태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부산지검장	(사직)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검찰 총장
대검찰청차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대구고검장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	박영수	제주	동성고	서울대 법대	10	대전고검장	(사직)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10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전고검장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11	대구지검장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대검중앙수사 부장	법무부차관
부산고검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대전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	대검공안부장	대구고검장

표 3. 검사장 직책

2008년 직책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이전근무처	2009년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15	대전지검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	울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14	서울고검 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감찰관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14	고양지청장	법무부 감찰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13	서울고검검사 (법무부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15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14	대전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청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14	광주고검 차장	대전지검장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형사부장(직대)	민유태	서울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14	대구지검 1차장	전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울산지검장	대구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15	광주고검 차장	사법연수원부원장
대검 감찰부장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15	서울고검검사	
서울고검 차장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14	서울고검 공판부장	제주지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4	안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구고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15	서울고검검사	대전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15	수원지검 1차장	서울고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이복태	경남 밀양	경성고	성균관대 법대	11	법무부 감찰관	(사직)
서울남부지검장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13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광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박상옥	경기 시흥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의정부지검장	(사직)
서울서부지검장(직대)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14	광주고검 차장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박태규	경남 남해	남해종고	동아대 법대	13	춘천지검장	(사직)
인천지검장	신상규	강원 철원	경북고	서울대 법대	11	광주지검장	광주고검장
수원지검장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춘천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울산지검장
대전고검 차장	(공석)						

대전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13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 지검장
청주지검장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 시	서울대 법대	14	대구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14	성남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김종인	충남 천안	경복고	서울대 법대	12	대검 감찰부장	서울동부 지검장
대구지검1차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 고	서울대 법대	15	서울북부지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부산고검 차장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 대 법대	12	서울고검 차장	(사직)
부산지검장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 대 법대	12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부산지검1차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4	서울중앙지검 2차장	춘천지검장
울산지검장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부산지검 1차장	대검 공안부장
창원지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제주지검장	서울서부 지검장
광주고검 차장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대	13	서울고검 형사부장	(사직)
광주지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13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남부 지검장
전주지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14	부산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제주지검장	박영관	전남 신안	목포고	설교관 대 법대	13	전주지검장	(사직)

3. 2008년 검찰 중간간부

- 고등검찰청 검사는 제외하고,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고검검사급), 대검 소속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지검 차장, 지검부장 및 부부장, 지정의 지청장과 차장, 부장, 부부장 중 중간간부(고검검사급), 법무연수원 교수 등임
- 265명중 출생지가 확인안 된 14명을 제외한 251명중 50명이 대구경북 지역 출신(고교 포함)임

표 4. 고검검사급(일부 제외)

2008년 직책	성 명	출생지	출신 고교	출신 대학	연수원 기수	이전근무처	2009년 현재
----------	-----	-----	-------	-------	--------	-------	----------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17	김천지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법무부 법규제담당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19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법무과장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형사제1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국가승무과장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21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21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0	수원지검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2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진경준	전남 목포		서울대 법대	21	속초지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권익환	서울	여의도 고	서울대 법대	22	상주지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범죄예방 기획과장	허상구	부산	부산동 고	부산대 법대	2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과장	
법무부 사회보호정책 과장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22	남원지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구조지원과장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21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22	의정부지검 부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 고	이화여 대 법대	23	창원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20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대변인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 대 법대	17	법무부 홍보관리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21	영월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대검대변인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부산고검검사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17	대구고검검사	의정부지검 차장

과학수사 기획관				법대		(국정원파견)	
대검 과학수사 담당관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대검 디지털수사 담당관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21	청주지검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기획관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20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정보통신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중앙수사 1과장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 고	연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평택지청장
대검 중앙수사 2과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첨단범죄 수사과장	이동열	경기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22	공주지청장	대검 첨단범죄수사 과장
대검 형사1과장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20	대검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검 형사2과장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21	제천지청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이준명	경북 영주	경신고	연세대 법대	20	대검마약과장	인천지검부장 (해외파견)
대검 마약과장	최윤수		내성고	서울대 법대	22	논산지청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피해자인권 과장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의성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대검 공안1과장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2과장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21	인천지검 부부장(법제 처파견)	대검 공안1과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22	인천지검 부부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 감찰1과장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19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포항지청장
대검 감찰2과장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 고	서울대 법대	20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인천지검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 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공안1과장	의원면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19	대검 범죄정보 1담당관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19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원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 오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목포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고검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고검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감찰2과장	진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 시	서울대 국문학	2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감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18	대검 중수1과장	수원지검2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 대 법대	19	법무부 보호기획과장	충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20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	봉 육	서울	여의도 고	서울대	19	대검 혁신기획과장	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 종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부장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정보통신 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19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20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염동신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조정철	경북 달성	청구고	서울대 법대	19	수원지검 특수부장	의원면직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김청현	부산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0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고검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16	부산지검 2차장	광주지검차장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곽규홍	충남	여의도 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홍성지청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20	인천지검 형사 4부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2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20	수원지검 형사 4부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공판송무부장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21	고양지청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16	대검 공안기획관	대전지검차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산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19	서울중앙지검 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0	수원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20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원범연	충남 공주	공주대 부고	성균관대 법대	21		부천지청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감찰2과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박철완	전북 익산	전주고	고려대 법대	21	춘천지검부장	서울고검검사(안양지청부장 내정)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16	대검 과학수사 기획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19	사법연수원 교수	순천지청차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신문식	경북 문경		연세대 법대	19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20	법무부 구조지원과장	광주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서울대 법대	20	수원지검부장	인천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 부고	조선대 법대	20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박경준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21	정읍지청장	대구지검부장
서울북부지검 공판송무부장	김진원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 법대	31	*박진원->김진원	
서울서부지검 차장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16	제주지검차장	대구서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통영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경주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정석우	경남 진해	경복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과학수사 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김용호	대구	대구심 인고	서울대 법대	20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첨단범죄 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송무부장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법대	21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부산고검 검사
의정부지검 차장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16	대구지검 2차장	법무부인권국장 (내정)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김 환	전북 완주	전주고	고려대 법대	19	대전고검검사	의원면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순영기	대구	대구경 신고	서울대 법대	19	부산지검형사 2부장	대구고검 검사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20	인천지검부장	대구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20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 법대	21	광주지검 특수부장	성남지청부장
고양지청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15	서울남부지검 차장	대구지검1차장
고양지청 차장	정윤기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17	충주지청장	전주지검 차장
고양지청 부장	이상철	충북 충주	충주고	동국대 법대	20	광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 고검검사
고양지청 부장	김종호	전북 무주	제주 제일고	한양대 법대	21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1차장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부 김찰기획관	서울고검 형사부장
인천지검 2차장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동영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최준원	대구 달성	경북고	서울대 법대	18	고양지청부장	서울고검검사
인천지검 형사2부장	박진영	전남 북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19	광주고검검사	김천지청장
인천지검 형사3부장	권도욱	대구 대륜고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20	울산지검 형사1부장	대구고검검사
인천지검 형사4부장	이성욱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20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고검검사
인천지검 형사5부장	이 옥	전남 고흥	사례지 오여고	고려대 법대	21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21	수원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21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22	안산지청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검사)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2	장흥지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부천지청장	성시웅	충남 예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5	창원지검차장	(사직)
부천지청 차장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고검검사	창원지검 차장
부천지청 부장	남명현		배재고	연세대 법대	20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
부천지청 부장	정인균	전북 순창	전주고	한양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주 지검부장
수원지검 1차장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 고	서울대 법대	16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수원지검 2차장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17	대검 홍보기획관	인천지검 1차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18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안산지청차장
수원지검 형사2부장	강태순	경남 진양	부산상 고	고려대 법대	19	사법연수원 교수	의원면직
수원지검 형사3부장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0	대구고검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 부고	서울대 법대	20	인천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 고	고려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 감찰관실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22	영덕지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김성준	부산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22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서울고검검사 (안양지청부장 내정)
안산지청장	구본민	전남 담양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5	서울서부지검 차장	(사직)
안산지청 차장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17	순천지청차장	청주지검차장
안산지청 부장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 법대	20	대구지검 형사4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안산지청 부장	송인택	대전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안산지청 부장	정재봉	서울	서라벌 고	성균관 대 법대	22	천안지청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성남지청장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15	대검수사기획 관	부산지검1차장
성남지청 차장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 대	17	부산동부지청 차장	울산지검차장
성남지청 부장	이상현	경남 마산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대	20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수원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부장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성남지청 부장	박계현	밀양	예일여 고	고려대 법대	22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검 차장	박충근	서울	덕수상 고	건국대 법대	27	서산지청장	천안지청장
춘천지검 부장	이재덕	경기 화성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	서울대 법대	21	제주지검부장	서울고검 검사
춘천지검 부장	김성렬	전남 함평		단국대 법대	23	천안지청부장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차장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 대 법대	15	인천지검 1차장	부산고검 차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16	수원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검사
대전지검 형사2부장	김영태	충북 청주	청주 청석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전지검 형사3부장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0	순천지청부장	광주지검부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박 철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22	영동지청장	법무부 법질서 규제개혁 담당관
대전지검 공안부장	(공석)						
청주지검 차장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16	국가청렴위 비서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 부장	김현호	전북 임실	원광고	고려대 법대	2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대구고검 검사
청주지검 부장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 대 법대	23	목포지청부장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2차장	차동언	경남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7	대전고검검사	순천지청장
대구지검	서범정	대구	거제	고려대	18	서울중앙지검	대검

형사1부장			중앙고	법대		형사8부장	과학수사기획관
대구지검 형사2부장	정성윤	전남 담양	광주송 일고	고려대 법대	19	대구고검검사	서울고검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구지검 형사3부장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 법대	21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검사)
대구지검 형사4부장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2	부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검사 (안양지청부장 내정)
대구지검 형사5부장	(공석)						
대구지검 공안부장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인천지검 부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22	인천지검 부부장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23	울산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공판부장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23	청주지검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중환	경북 구미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서울고검검사	서울고검검사
대구서부지청 차장	임상길	전남 진도	목포고	고려대 법대	17	수원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구서부지청 부장	손태근	밀양	경남 마산고	연세대 법대	22	대구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검사
대구서부지청 부장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 고	고려대 법대	2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2차장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17	여주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18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고양지청차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고석홍	전북 고창	장충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부산지검 형사3부장	서상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구지검 형사3부장	대구고검검사
부산지검 형사4부장	이종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22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성남지청부장
부산지검 형사5부장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22	창원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21	대전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최세훈	부산	부산남 고	서울대 법대	22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 계공고	부산대 법대	23	부산지검 공판부장	인천지검 외사부장
부산지검 외사부장	(공석)						
부산지검 공판부장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23	통영지청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건종	서울		서울대 법대	15	서울고검검사 (공정위파견)	서울고검검사
부산동부지청 차장	김종로	경남 밀양	경남 세종고	부산대 법대	17	평택지청장	부산고검검사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21	안산지청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순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22	부천지청부장	안산지청부장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고검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검 차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16	포항지청장	성남지청장
울산지검 형사1부장	순영재	경북 경산	성서고	서울대 법대	19	부천지청부장	의원면직
울산지검 형사2부장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 부고	고려대 법대	20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울산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3부장	(공석)						
울산지검 공안부장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대전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23	원주지청부장	부산지검 형사5부장
창원지검 차장	김현정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16	울산지검차장	고양지청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고검검사	부산지검 형사1부장
창원지검 형사2부장	김성은	경남 창원	마산고	성균관 대 법대	22	춘천지검부장	고양지청부장
창원지검 형사3부장	(공석)						
창원지검 공안부장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3	평택지청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특수부장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23	포항지청부장	대구지검 형사4부장
광주지검 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15	서울동부지검 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박환용	전북 남원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	18	성남지청부장	서울고검검사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 고	한양대 법대	19	부산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 고	전남대 법대	22	해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광주지검 공안부장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23	서산지청부장	논산지청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23	전주지검부장	인천지검 미약조직범죄 수사부장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23	순천지청부장	법무부 검찰담당관실 검사
광주지검 공판부장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23	충주지청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순천지청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16	안산지청차장	부천지청장
순천지청 차장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1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검사
순천지청 부장	이종근	경기 파주	경기고	서강대 경제학	22	군산지청부장	서울고검 검사
순천지청 부장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 동신고	한국외 대 법대	23	홍성지청부장	정읍지청장
전주지검 차장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16	춘천지검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전주지검 부장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21	청주지검부장	서울고검검사

전주지검부장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23	군산지청부장	대전지검 공판부장
제주지검 차장	손기호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대	17	원주지청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제주지검 부장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서울대 법대	22	울산지검 특수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제주지검 부장	이승한	서울	여의도 고	고려대 법대	23	광주지검 공판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4. 주요 수사관련 부서 인사

1) 대검 중수부

대검 중수부장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대검 수사기획관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대검 중앙수사1과장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대검 중앙수사2과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이동열	경기 안양	신성고

2) 대검 공안부

대검 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대검 공안기획관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대검 공안1과장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대검 공안2과장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3) 일반 형사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하중	전남 담양	사례지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4) 선거 및 공안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5) 기업범죄 및 특수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 육	서울	여의도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5. 주요 수사 부서별 처리 수사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사건중 대표적인 것들임

□ 대검 중수부

-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 박경호 대검 중앙수사1과장 / 박정식 대검 중앙수사1과장 /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주요 처리 사건 : 노건평, 박연차, 정대근 세종증권, 휴켐스 인수 의혹 사건 / 2008년 공기업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석유공사, 토지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김재윤 의원 병원인허가로비의혹 사건 수사 / 재벌가 3세(구본호) 추가조작 사건 수사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불법농지취득사건 수사(무혐의) /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수사

-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PD수첩 광우병프로그램 사건 수사(수사중 지휘부와 이견으로 사직)

- 조은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광우병촛불시위 관련 등교거부 핸드폰문자메시지 사건 수사(기소, 무죄판결)

- 지익상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촛불집회 진압관련 경찰(지휘)관 고소고발사건 수사(수사방치)

○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기소)

□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기소) / 전교조 서울시교육감선거 주경복 후보 지원 사건 수사(기소) /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밀유출 사건 수사(입건유예) / 정몽준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무혐의처분, 법원 재정신청후 사건 다시 배당받음) 등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기소)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공천현금 사건 수사(기소) /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뇌물사건 수사(기소) /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참여정부 공작설' 허위사실 유포 사건 수사(무혐의처분) /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의원 공천현금 사건 수사(기소)

○ 이영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촛불집회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수사(약식기소 등) /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자(사회자 등) 수사(기소)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수사 / 2005년 경찰진압으로 인한 농민시위 참가 농민 사망 사건 수사(기소중지) / 국정감사장 국회의원 항의관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건 수사(기소)

□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봉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공기업(증권선물거래소)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구본호, 정일선, 박중원, 김영집 등 재벌가 2,3세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 이명박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혐의 사건 수사

○ 우병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공기업(자산관리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기소) / 대통령 부인 사촌 김옥희씨 공천
로비 사건 수사(기소) / 우리들의료재단 탈세 등 사건 수사 /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
배임 사건 수사(기소) / 참여정부 시절 부산자원 특혜의혹 사건 재수사 / 정국교 통합민주
당 당선자 추가조작 사건 수사(기소)

○ 구본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수사(기소) /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 수사

○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미네르바' 박씨 사건 수사

○ 문무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임원 기소, 조석래 회장 불기소) / 한전 자회사 헐값인수 등 권
정달 자유총연맹회장 횡령 사건 수사(기소) / 연예기획사 PD로비 사건 수사(기소)

○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금품수수 사건(기소) / 신성해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감세
로비 사건(기소, 무죄판결)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기소) / 남중
수 KT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인 사건 수사(기소) / 조영주 KTF사장 납품비리
사건 수사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농협자회사 휴켐스 특혜인수 의혹 사건 수사 / 이주성
전 국세청장 차명계좌 의혹 사건 수사

○ 김광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2008년 공기업(석탄공사, 관광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국방부군
납로비 사건 수사(기소) /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사건 수사 / 환경운동연합 정부보
조금 등 횡령사건 수사(기소)

.

2부. 이명박정부 1년 검찰 주요 수사

○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1.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집시법 위반죄 등 적용 수사
2.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명예훼손혐의 적용 수사
3.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수사
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5.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KBS 정연주 사장 배임죄 적용 사건 수사
6.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사건 및 죄열 환경재단대표 표적 수사

○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8.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 사건 수사
9.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표적 수사
10.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 사건 수사

○ 집권세력 관련 수사

11. 대통령 사돈관계 조석래 회장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12.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가 2,3세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13.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진압 경찰폭력 피고소 사건 수사

14.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 수사
15.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시도 사건 수사

○ 부정부패 수사

16.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휴캡스인수 비리, 탈세,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사
17.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18.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 선거관련 수사

19. 4.9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수사
20.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전교조 정치자금법 적용 수사
21.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제공 사건 수사

○ 공안 및 기타 수사

22.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사건 수사
23.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이적단체 혐의 적용 수사
24.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수사
2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1.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집시법 위반죄 등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5월 2일부터 서울시청과 청계천 일대에서 연 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였던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 혐의, 교통방해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수사,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대검>

검찰총장 임채진, 공안부장 박한철, 공안1과장 정점식 등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2차장 국민수, 3차장 김수남 - 형사4부장 지역상, 공안2부장 이영만,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 등

3. 수사 경과

- 2008년 5월 27일, 검찰,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촛불집회에 대한 처벌 방침 발표
- 그후 집회참가자 연행 되는대로 입건,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불구속기소, 일부는 구속기 소함
- 7월 1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 구속기소
- 11월 8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5명 구속
- 11월 2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5명 구속기소
- 10월 2일 현재, 집회참가자 34명 구속 기소, 90명 불구속 기소, 1100여 명을 50~4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중(12월 6일 현재 구속기소자는 70명)

4. 수사 결과

- 70여명 구속 기소
- 90여명 불구속 기소
- 1100여 명 약식기소

5. 재판 결과

- 단순참가자 일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선고
- 범금형에서 집행유예형, 실형 등 다양하게 선고됨
- 일부의 경우는 무죄 선고되기도 함(단체휴교시위 휴대전화 메일발송 사건 무죄)

6. 약평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구시대적이자 위험적인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해 불법집회로 규정해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려 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임

2.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명예훼손혐의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2부장 임수빈(2009.1까지)/ 형사6부장 전현준(2009.2이후)

3. 수사 경과

- 2008년 6월 19일, 검찰, 농식품부로부터 수사의뢰받음
- 7월 3일, 7일, 검찰, MBC에 프로그램 원본자료 제출 요청(PD수첩측, 거부함)

- 7월 11일, 검찰 제작진 4명에게 검찰 출석통보(PD수첩측, 거부함)
- 7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최고교장 1차장 검사, "황우석 사건 때처럼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 진실 규명에 착수한다면 차장검사 개인의 소견으로는 수사를 보류할 의향이 있다"
- 7월 24일, 검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 7월 29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검찰은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식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보도 내용 가운데 대표적으로 '19군데'에서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 9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 하여금 출석 요구에 3번 이상 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수사를 하거나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도록 하겠다'는 발언 이후 검찰 계속 소환 통보했으나 PD수첩측 응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 교착 상태
- 2009년 1월 7일, 수사주임검사 임수빈 형사2부장, 사표 제출,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소환 등과 관련하여 지휘부와 마찰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2월 정기인사 후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에 사건 재배당함

4. 수사 결과

계속 수사중

5. 약평

언론의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임에도 정부정책의 잘못을 따져보는 비판적 프로그램마저 극히 일부의 오류를 문제삼아 형사범죄화한 사건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 수사임.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담당 부장검사가 지휘부와의 갈등속에 사표를 제출한 사건으로서 검찰의 상명하복관계, 위계질서 등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여준 사건으로, 검사도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임.

3.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촛불시위에 대한 조중동 신문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대항으로 벌어진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네티즌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 - 검사 이영재 등(주임검사)

3. 수사 경과

- 2008년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단속 특별지시
- 6월 20일, 검찰, 수사 착수
- 6월 23일 대검 형사부(부장 민유태) 주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유관기관 대책회의(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참여) 개최
(참석자 :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 이동열 첨단범죄수사과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 이조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나현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
- 7월 3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와 글을 올린 빈도가 높은 네티즌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
- 7월 8일, 검찰, 네티즌 20여 명 출국금지 조치
- 8월 19일, 검찰, 카페 운영진 이 모 씨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8월 21일, 검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와 광고 중단 운동 글을 많이 올린 양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 8월 29일, 검찰, 네티즌 24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2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기소, 나머지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

4. 수사 결과

- 구속 기소 2명
- 불구속 기소 11명
- 일부 약식 기소(피고인들 정식재판청구)

5. 재판 결과

-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혐의 유죄 인정

2009년 2월 19일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머지 네 티즌 23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월에 집유 2년,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300만원씩의 유죄 선고. 이 중 벌금 100만원을 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6. 약평

비록 1심에서 검찰의 기소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의 행위방식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자유로운 주체들인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제안하고 방법을 설명한 것에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수사, 기소한 것이 매우 부당했던 사건

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쓴 일부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며 구속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김주선

* 1차장 최교일 - 형사5부장 김하중

3. 수사 경과

- 2008년 12월 29일, 검찰, 미네르바 박 모 씨의 12월 29일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가능판단하고 수사착수
- 2009년 1월 2일, 검찰, 미네르바가 박 모 씨라는 신원을 파악함
- 1월 7일, 검찰, 박 모씨 긴급체포함
- 1월 9일, 검찰, 박 모씨가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함(10일 영장발부됨)
- 1월 16일, 검찰, 구속 기소

* 형사5부의 수사

- 2008년 12월 초,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글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 후 내사 착수, 신원파악함. 그러나 법적처벌 대상아니라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

4. 수사 결과

- 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재판 진행중

6. 약평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의 대표적 사례임.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여부 모두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조항이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는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임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

칙을 몰각한 수사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 까지 이른 사건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표현의 자유를 근거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수사임

5. 법원의 세금소송 중재수용 KBS 정연주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KBS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정부와 보수정치세력의 압박이 매우 거센 2008년 여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한 것을 일부 세력이 문제삼자, 검찰이 회사가 실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조사부장 박은석

3. 수사 경과

- 2008년 5월 14일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KBS 전직 간부 조 모 씨, 정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검찰, 정연주 사장 6월 17일과 19일, 26일 1,2, 3차 소환 통보
- 8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정 전 사장 체포
- 8월 14일, 검찰, 정 전 사장 조사 후 귀가조치

- 8월 20일, 검찰, 정 전 사장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 불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재판 진행중

6. 약평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소송중단이었으며,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는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 비정상적인 수사

대표적 언론기관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검찰권이 집권자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동원된 전형적인 예로서 대통령에게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자기 손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임

6. 환경운동연합 공금횡령 사건 및 최열 환경재단대표 표적 수사

1. 사건개요

환경운동연합의 일부 실무진들이 정부나 기업, 시민들이 낸 보조금이나 후원금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수사한 사건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환경련의 공금을 횡령했거나 또는 다른 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주장하며 수사에 나선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3부장 김광준

3. 수사 경과

-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 9월 19일,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출국금지조치
 - 10월 13일, 공급횡령(원고료 등 개인계좌 보관 등) 혐의로 환경련 전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15일, 기각됨)
 - 10월, 검찰,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개발업체 대표이사) 소환조사
 - 10월 31일, '서해안 살리기' 시민성금 횡령 등 혐의로 환경련 전 간부(기획운영국) 김 모씨 구속
 - 11월 7일, 검찰, 환경재단 압수수색
 - 11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 지원금 횡령 등 혐의로 환경련 전 간부(시민사업국) 김 모씨 소환
 - 11월 13일, 검찰, 최열 대표 소환조사
 - 11월 19일, 검찰, 최열 대표 2차 소환조사
 - 12월 1일,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청구(3일, 기각됨)
 - 12월 19일, 검찰,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 2차 소환조사
 - 2009년 1월 15일, 2월 24일,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 3차, 4차 소환조사
- * 최열 대표 관련 수사를 위해 2009년 3월 초까지 6개월여 동안 76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음

4. 수사 결과

* 수사 진행 중

5. 약평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범죄혐의를 수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과도한 검찰권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았음
특히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혐의가 뚜렷해지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관련

사실을 유포하였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등 한반도대운하 등 환경파괴 개발위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인 최열 대표에 대한 흡집내기를 목표로 한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2005~2006년 경 세종캐피탈 회장 김형진과 사장 홍기옥이 농협중앙회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과 그의 동생 정광용 등을 통하여 정대근 회장과 가까운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시 농협사료 대표 남경우를 통하여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3. 수사 경과

- 2008년 9월 검찰,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 금품로비 첩보 입수 내사 착수
- 11월 19일, 세종캐피탈 등 압수수색,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과 홍기옥 사장 체포
- 11월 22일, 홍기옥 사장 구속
- 11월 24일,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속
- 12월 4일, 노건평 씨 구속
- 12월 10일, 홍기옥 사장 구속 기소
- 12월 16일,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소 기소

- 12월 22일, 노건평 씨 구속 기소,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 노건평 씨 구속기소(알선 수재 등)
- 정화삼 씨(노무현 대통령 고교동창)구속기소(알선 수재 등)
- 정광용 씨(정화삼 씨의 동생) 구속기소(알선 수재)
- 박종식, 오경자 씨 불구속 기소(알선 수재)
-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뇌물, 별건 구속중)
-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불구속 기소,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5. 재판 결과

* 재판 진행중

6. 약평

전임 정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개입된 불법금품로비를 수사한 사건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일부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 불법금품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건

8.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대통령기록물 보관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방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대통령 기록물을 퇴임후 거주하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이 원본여부인지를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

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신, 구 대통령측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고,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고발한 것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2008년), 천성관(2009년) - 3차장 김수남(2008년), 최재경(2009년) -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2008년), 이혁(2009년)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4명과 외부지원 검사 1~2명으로 수사팀 구성)

3. 수사 경과

- 2008년 7월 28일, 검찰,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음에 따라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에 배당하고 수사착수
 - 7월 30일, 검찰,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 고발인과 함께 피고발인인 디네드 허모 대표와 실무 직원 1명을 불러 조사
 - 8월 1~2일,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의 '이지원' 서버 압수수색 조사
 - 8월 5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소환조사
 - 8월 8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소환조사
 - 9월 1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 * 이후 봉하마을 방문조사와 대통령 서면조사를 추진하다 진척없는 상황

4. 수사 결과

- 계속 수사중

9. 신성해운 불법로비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표적 수사

1. 사건개요

2004년 신성해운이 4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참여정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前) 사위 등을 이용해 로비를 벌였으며, 정 전 비서관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또 당시 열린우리당의 실세였던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2부장 윤갑근(주임검사)

* 서울중랑지검 조사부가 맡다가 특수2부로 교체

3. 수사 경과

- 2008년 2월 2일, 검찰, 신성해운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 청와대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수사착수
- 3월 말, 검찰,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에서 특수2부(부장 윤갑근)로 재배당
- 4월 24일, 검찰, 이재철 로비리스트에 포함된 이광재 의원 부인 소환조사
- 5월 1일, 검찰, 이주성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
- 5월 29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정상문 전 비서관 등 기소

4. 수사 결과

- 정상문, 불구속 기소(1억 원 수뢰,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
- 신성해운 김상봉 전무, 구속 기소(비자금 조성해 68억을 횡령한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 송파경찰서 경찰관 이 모씨, 불구속 기소(2천만 원 수뢰, 제3자 뇌물취득죄)
-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 씨와 부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기타 2명 변호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무죄
: 2008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
-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 씨, 부친 이 모씨, 1심 유죄
: 징역3년6월, 징역 1년6월

6. 약평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의 전임 참여정부 핵심 인사 중의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으나, 결국 핵심 피고인이자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었음이 확인된 사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법조계(검찰간부)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 점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부실수사라는 비난도 초래하였음

10. 강무현 참여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뇌물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임 시절 직무와 관련해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금품을 받은 점과 관련하여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2부장 윤갑근 - 검사 김형길(주임검사)

3. 수사 경과

- 2008년 5월, 검찰,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균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 제2차관이 해양수산부 시절 한 해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임을 밝힘
- 5월 강무현 전 장관 소환조사
- 7월 18일 검찰 강무현 전 장관 긴급체포.
- 7월 20일 강무현 전 장관 구속(5개 해운사와 3개 조합 등으로부터 항로 조정과 선박 증편 등의 청탁과 함께 8천여 만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4. 수사 결과

- 강무현 전 장관, 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1심 재판, 유죄 선고
: 2008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이경춘 부장판사, 징역 2년, 추징금 7,650만원 선고
- 2심 진행 중

11. 대통령 사돈관계 조석래 회장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조석래 회장의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물산, 효성건설, (주)효성 등에서 납품단가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1부장 문무일

3. 수사 경과

- 2008년 2월 초, 검찰, 국가정권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건 자료 이첩받음
 - 4월, 검찰,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관련 사건('육군의 마일즈 사업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자료를 이첩받음
 - 4월, 검찰, 특수1부에 배당, 수사개시
 - 9월, 검찰, 관련자 소환조사 시작
 - 2009년 1월, 효성건설 비자금 사건 수사 관련 송형진 효성건설 사장 소환조사
 - 2009년 1월 12일, 검찰, (주)효성 중공업피지(PG) 김 모 전무 구속영장 청구(납품단가 부풀려 한국전력에 300억원 과다청구 사기혐의)
- * 현재 수사 진행중

4. 수사 결과

* 수사 진행 중

5. 약평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고 수사관련 자료가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매우 느리게 진척되고 있는 대표적 사건으로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이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의 수사라는 점 외에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려워,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사건

12.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가 2,3세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비롯해, 구본호(LG그룹가), 정일선(현대그룹가), 김영집(한국도자기), 박중원(두산그룹가) 등 재벌가의 2·3세들이 미공개(내부)정보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시세차익을 얻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 구본호 씨 사건 : 대검 중수부장 박용석 - 검사 박경호(주임검사)
- * 박중원 씨 사건 :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1차장 최교일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조사부장 박은석
- * 김영집 씨, 조현범 씨 사건 :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

3. 수사 경과

- * 구본호 씨(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
 - 2008년 6월 19일, 대검 중수부, 구본호 씨 대우그룹 로비의혹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
 - 7월 9일, 대검 중수부, 구본호 씨 구속기소(미디어솔루션 주식 주가조작 혐의)
- * 박중원 씨(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 7월 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박중원 씨가 최대주주였던 뉴월코프 압수수색
 - 7월 28일, 검찰, 박중원 씨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 8월 18일, 검찰, 박중원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뉴월코프에 거액투자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 2009년 1월 2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박중원 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미끼 투자금 20억 유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 * 김영집 씨(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앤디코프 전 사장)

-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김영집 씨 수사착수사실 공개
- 11월 28일, 검찰, 김영집 씨 구속
- 12월 16일, 검찰, 김영집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총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

* 조현범 씨(한국타이어 부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 9월 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 엔디코프의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올렸는지, 또한 엔디코프 유상증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힘.
- 12월 30일,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소환조사

4. 수사 결과

- 구본호 씨 구속 기소(2008년 7월 9일, 구 씨가 대주주인 범한판토스 회삿돈 250억원 차용, 미디어솔루션 주식 주가조작 혐의)
- 박중원 씨 구속 기소
- 김영집 씨 구속 기소
- 조현범 씨 수사 중

5. 재판 결과

- 구본호 씨, 1심 유죄, 200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경 : 징역 3년, 별금 172억 원,
- 박중원 씨, 김영집 씨, 재판 진행중

5. 약평

다른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서만큼은 수사에 진척이 없는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음

13.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진압 경찰폭력 피고소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촛불집회 참가한 시민들 중에 집회를 강제해산하거나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장비를 사용한 일들이 빈번하고 또 불법체포감금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그 지휘관들을 고소한 사건임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4부장 지역상 - 형사4부 안범진 검사, 정진기 검사

3. 수사경과

2008년 6월 19일, 6월 30일을 비롯해 7월과 8월에 걸쳐 곤봉과 방패로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거나 불법체포, 불법구금한 경찰관과 지휘관들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됨

* 검찰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하고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만 실시함

* 고소인 조사이후 서울양지검은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등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지 않음

2009년 2월까지 수사에 진척사항 없음

4. 수사결과

기소여부 미결정

5. 약평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준수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대야할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 대표적 사건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검찰이 주장하는 공명정대함과 법질서 준수가 허구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수사임

14.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 씨가 지인인 김태환 씨오바 함께 2008년 2~3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 주겠다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천로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 검사 하담미

* 선거관련 사건 또는 금품로비 사건의 경우 통상 공안부나 특수부에서 맡게 되나,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하고 업무여력이 있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측 설명함

3. 수사 경과

- 200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천명목 금품수수 사건 파악
- 2008년 7월, 검찰, 청와대로부터 사건이첩받음
- 2008년 8월 1일 김옥희 씨, 김태환 씨 사기 혐의로 구속
- 8월 13일 김종원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구속기소

- 8월 14일 김옥희 씨와 김태환 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4. 수사 결과

- 김옥희 씨, 김태환 씨, 김종원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5. 재판 결과

- 1심, 200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광만 부장판사

: 김옥희 씨 유죄, 징역 3년, 추징금 31억8천만원

: 김종원 씨 유죄, 징역 1년 6월

: 김태환 씨 유죄, 징역 1년

- 2심, 2009년 1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

: 항소 기각

15.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시도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이 2008년 1월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대한전자통신의 이모 대표에게 국방부 사업의 납품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계약 금액의 5%를 요구하고 인사비 등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3부장 김광준 - 검사 김경수(주임검사)

3. 수사 경과

- 2008년 8월 7일,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에 수사의뢰,
- 8월 8일, 검찰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긴급체포
- 8월 11일, 검찰,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속
- 8월 13일, 검찰, 공범 검거반 구성
- 8월 20, 25일, 검찰, 공범 한덕영 씨(20일), 김재현 씨(25일) 체포.

4. 수사 결과

- 유한열, 한덕영, 김재현 씨, 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1심, 200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규진 부장판사
 - : 유한열 씨 유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3천만원
 - : 한덕영 씨 유죄,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5천만 원
 - : 김재현 씨 유죄, 징역 2년, 추징금 1억1천만 원

16.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휴캡스 인수비리, 탈세, 세종증권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첫째 2006. 2. 중순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이었던 정대근에게 휴캡스 지분 인수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주고, 정대근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농협 실무자들이 태광 실업에 휴캡스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 태광실업이 우선협상대

상자가 되도록 도와주며 태광실업의 인수대금 중 322억 원을 감액해 준 것, 둘째, 해외 배당 소득 미신고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2억 원, 주식 매매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37억 원 등을 포탈한 혐의, 셋째, 2005년 6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협의 진행이던 때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매수하였다가 인수가 공식 발표된 2005년 12월에 집중매각하여 25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3. 수사 경과

- 2008년 7월 국세청,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세무조사 후 박연차 회장 탈세 확인
- 9월 박연차 회장 출국금지
- 11월 중순 국세청, 박연차 탈세 혐의 고발. 검찰,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 11월 19일 검찰,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 체포
- 11월 23일 흥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구속
- 11월 24일 정화삼 씨 형제 구속, 정대근 소환조사
- 12월 1일 노건평 씨 소환조사
- 12월 2일 검찰, 노건평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구속
- 12월 12일 조세포탈과 뇌물 등의 혐의로 박연차 회장 구속

4. 수사 결과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입찰방해, 조세포탈)
-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불구속 기소(뇌물, 입찰방해, 별건으로 구속상태)
-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입찰방해)
- 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이사(입찰방해)
-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세종증권 주식 시세차익 사건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수사를 통해 보강할 것이라 2008년 12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힘

*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하여서는 탈세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이용해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가 더 있고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진행중

5. 재판 결과

* 재판 진행중

17.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관련 수사

1. 사건개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임원교체를 시도하는 상황속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전국의 일선 검찰이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척결 대상 범죄'라는 명분으로 수십 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토지공사 등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등),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특수3부장 김광준(석탄공사, 산업은행-그랜드백화점 등)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창(증권예탁결제원, 한국도로공사 등)

<기타 전국 지방검찰청>

3. 수사 경과

- 2008년 3월, 대검 중수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
- 4월, '공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 전국 검찰청 시달
- 5월 12일, 대검 중수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지시
- 5월 13, 14, 15일,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 그랜드백화점, 한국증권거래선물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4. 수사 결과

- 30여개 공기업 비리 적발, 82명 구속 기소, 168명 불구속 기소

공기업 대상 수사 결과(검찰발표)

대상 기관	수사 내용	수사 청	총 단속 인원(구속)
한국도로공사	국유지 임대 매각 비리 관련 한국도로공사 前 인천지사 부지사장 등 3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	44명 (5명)
	승진 인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前 국회의원 장○○ 불구속 기소		
	공사 발주 관련 호화 여행 등 금품 수수 前 도로공사 홍보실장 등 2명 구속 기소, 공사업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부산동부	
	고객만족도 평가 방해 경기본부재무팀 3급 등 29명 불구속 기소	성남	
한국토지공사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 비리 인천지역 본부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	26명 (6명)
	공사 수주 명목 금품수수 前 토지공사 사장 김○○ 장남 구속 기소	수원	
	판교 신도시 도로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신도시계획처장 윤○○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무연고 토지 공탁금 관련 소송 비리 변호사 등 3명 구속 기소	청주	
대한주택공사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설계 변경 관련 금품 수수, 판교건설사업본부 전문위원 등 2명 구속 기소	수원	5명 (2명)
	아파트 재개발 공사 관련 금품 수수, 행복도시청마을 사업단장 구속 기소, 경기지역본부 토목과장 불구속 기소	성남	6명 (1명)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관련, 건설본부장 및 하도급업체 임원 등 5명 구속	수원	9명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5명)
한국전력공사	전산 구축 사업 선정 비리 관련, IT지원처 과장 1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2명 (1명)
인천국제 공항공사	민간 투자 사업 비리 관련, 허브화 지원 부장 구속 기소	인천	1명 (1명)
대한석탄공사	특정 건설업체 부당 지원 관련 팀장 1명 구속 기소, 관리본부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3명 (1명)
한국지역난방 공사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비리 분당지사 과장 1명 구속 기소, 농불공여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5명 (1명)
한국석유공사	해외 유전사업 및 성공불 용자 관련 비리 前 해외개발본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4명 (4명)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및 대출 알선 비리 관련 신용보증기금 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3명 (3명)
	신입 직원 채용 비리 관련 전 인사본부장 구속 기소	서울서부	
국민연금관리 공단	서울외곽순환도로 지분 인수 관련 비리 공단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2명
근로복지공단	경매 배당금 횡령 성남지사 5급 직원 구속 기소	성남	5명 (4명)
	근로자 체당금 횡령 통영지사 과장 구속 기소	통영	
	산재보험 요율 변경 편의제공 대가 뇌물 수수 진주지사 과장 등 2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창원	
한국자산관리 공사	압류 주식 공매 관련 금품수수 신용지원부장 등 3명 구속 기소, 브로커 1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4명 (3명)
한국주택금융 공사	PF 대출 비리 관련 뇌물 수수 유동화관리부장 등 2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4명 (2명)
증권예탁 결제원	직원 채용 비리 관련 경영지원본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	5명
한국농촌공사	수의공사 관련 금품 수수 창녕지사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	밀양	2명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가 금품 수수 여신관리실 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순천	6명 (2명)
	산업은행 자금 조달 및 운영 편의 비리 관련 前 산은 부총재 등 2명 불구속 기소	부산	
	검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산업은행 前 팀장 1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	
한국중부발전 (주)	케너텍 관련 공사 수주 청탁 명목 금품 수수 前 중부발전 사장 구속 기소, 前 발전처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5명 (2명)
	보령화력발전소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보령화력본부 운영팀장 구속 기소	홍성	
강원랜드	호텔 증축 공사 관련 금품 수수 前 레저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7명 (5명)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금품 수수 前 시설관리팀장 등 2명 구속 기소		
	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취득 명목 금품 수수 산자부 사무관 구속 기소		

	강원랜드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도로공사 관련 뇌물 수수 강원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구속 기소		
	강원랜드 하도급 업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前 국회의원 조○○ 불구속 기소		
	금품 수수한 국회의원 최○○ 수사 중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하도급 업체 선정 비리 관련 식음료 파트장 등 4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5명 (4명)
한국전기연구 원	연구과제 선정 관련 뇌물수수 응용기술개발사업단장 1명 구속 기소	창원	1명 (1명)
한국기계연구 원 부설재료연 구소	정부 출연 연구비 횡령 에너지 재료 연구 그룹장 등 3명 구속 기소, 연구원 등 3명 불구속 기소	창원	6명 (3명)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입찰 비리 관련 연구원 총무과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대전	5명
코스콤	IT 설비 납품 관련 비리, 전 노조 위원장 등 3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	3명 (3명)
경기도시공사	승진 청탁 관련 뇌물 수수 前 경기도시공사 사장 오○○ 구속 기소, 후임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 불구속 기소 광교 신도시 보상 평가 범인 비리 관련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등 5명 구속 기소, 감정평가사 15명 불구속 기소 납품 청탁 관련 뇌물 공여 납품업체 대표 구속 기소	수원	23명 (7명)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단 업무 추진비 횡령 및 인사 비리 前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부산	5명 (1명)
강북구 도시관 리공단	채용 및 인사 청탁 비리 관련 금품 수수 前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기소	서울북부	1명 (1명)
농협	군납 육우 납품 비리 관련, 농협 인천 축산물가공사업소 겸수실장 등 2명 구속기소 농협 축산 관련 납품 청탁 금품 수수 등 前 농협 축산·경제 대표 구속 기소, 농협사료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부산 서울중앙	13명 (3명)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자금 투자 명목 금품 수수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구속 기소 투자 관련 금품 수수,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 아들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대구	2명 (2명)
한국철도시설 공사	경부고속철도 공사장 쇄석암 편취 비리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3명 구속 기소, 5명 불구속 기소	경주	8명 (3명)

5. 재판결과(1심 무죄 판결사례)

-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배임수재, 구속 기소) 무죄(2008년 12월 18일)

- 정장섭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뇌물, 기소) 무죄(200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
- 한국석유공사 전 김 모 해외개발본부장 등 임직원 2명(아프리카 유전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무죄(200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

6. 약평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검찰이 전격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6개월 이상 대검 중수부의 전면 수사인력 투입으로 전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인비리에 집중되어 구조적인 비리사슬을 발본색원하지는 못했다는 평이 있음 특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해 일부 사건은 검찰이 호언장담한 핵심임원의 비리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 채 하급 임직원 일부의 개인적 비리를 들춰내는 선에서 그쳤고 일부의 경우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정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엄포성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18. KT 남중수 및 KTF 조영주 사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남중수 KT 사장과 조영주 KTF 사장

이들이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특수2부장 윤갑근

3. 수사 경과

- 9월 22일, 검찰, 조영주 KTF 사장 배임수재 및 배임증혐의(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구속
- 10월 16일, 검찰, KT본사와 남중수 사장 집 압수수색
- 11월 5일, 검찰, 남중수 KT 사장 배임수재혐의(계열사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구속
- 11월 7일, 검찰,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 노 모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4. 수사 결과

- 남중수 KT 사장(배임수재 혐의)
- 조영주 KTF 사장 구속(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

5. 재판 결과

- 남중수 KT 사장, 1심 유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 2억7천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 2009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경 부장판사
- 조영주 KTF 사장, 1심 유죄, 징역3년, 추징금 24억28만원
: 2009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경 부장판사

19. 4.9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법 등 위반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2008년 4월 9일 총선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공천헌금 제공으로 양정례 의원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대검>

임채진 검찰총장, 박한철 공안부장, 정점식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 :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검사 송규종
(주임검사)

정국교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 검사 정진기(주임검사)

문국현 :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검사 진동혁(주임검사)

각 지검별 공안부 등

3. 수사 경과(주요 사건)

- 5월 30일 검찰,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의원,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등 공천현금 사건 불구속 기소
-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뉴타운 협공약 관련 정몽준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첫 소환
-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정몽준 의원 뉴타운 개발 관련 허위공약 혐의 무혐의 처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박진(종로)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뉴타운 협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 의원 뉴타운 협공약 관련 무혐의처분, 프랑스 대학 학위 허위기재 관련 현경병(노원갑) 의원 불기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뉴타운 협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안형환(금천)·구상찬(강서갑) 의원 무혐의 처분, 하버드대학 학력 잘못 기재 관련 안형환(금천) 의원 불기속 기소

* 2009년 1월 5일, 뉴타운 협공약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한 정몽준, 안형환 의원 재정 신청(민주당측 신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 내림.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 다시 배당됨(오세훈 시장,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내림

- 2009년 1월 20일, 검찰, 정몽준 의원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불구속 기소>

강기갑(민주노동당, 08.9.29), 강용석(한나라당, 08.7.18), 강운태(무소속), 구본철(한나라당), 김노식(친박연대, 08.5.30), 김성식(한나라당, 08.9.22), 김세웅(민주당), 김일윤(무소속, 08.9), 김재균(민주당, 08.10.9), 문국현(창조한국당, 08.10.7), 박진(한나라당, 08.9.26), 박종희(한나라당), 백원우(민주당, 08.9.22), 변재일(민주당, 08.9.26), 서청원(친박연대, 08.5.30), 신성범(한나라당, 08.9.29), 안형환(한나라당), 양정례(친박연대, 08.5.30), 유선호(민주당), 유재중(한나라당, 08.9.30), 윤두환(한나라당), 이무영(무소속), 이한정(창조한국당 08.5.9), 임두성(한나라당), 정동준(한나라당, 09.1.20), 정양석(한나라당), 조정식(민주당, 08.9.29), 조진형(한나라당), 최구식(한나라당, 08.9.30), 최욱철(무소속, 08.9.29), 현경병(한나라당, 08.9.26), 홍장표(한나라당, 08.8.28), 홍정욱(한나라당)

<구속기소>

이한정(창조한국당 08.7.17), 정국교(민주당, 08.5.9)

5. 재판 결과

강기갑 - 1심 벌금 80만원

강용석 - 1심 벌금 80만원, 2심 벌금 50만원(확정)

강운태 - 1, 2, 3심 무죄(확정)

구본철 - 1, 2, 3심 벌금 400만원(확정)

김노식 - 1, 2심 징역 1년(3심 진행중)

김성식 - 1심 벌금 80만원

김세웅 - 1, 2, 3심 벌금 500만원(확정)

김일윤 - 1, 2, 3심 징역 1년6월(확정)

김재균 - 1, 2심 벌금 90만원

문국현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박 진 - 1심 벌금 70만원

박종희 -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백원우 - 1, 2심 벌금 80만원

변재일 - 1, 2심 벌금 80만원

서청원 - 1, 2심 징역 1년6월

신성범 - 1심 벌금 80만원

안형환 - 1, 2심 벌금 150만원

양정례 - 1, 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선호 - 1심 벌금 70만원(확정)

유재중 - 1심 벌금 50만원

윤두환 - 1, 2, 3심 벌금 150만원(확정)

이무영 - 1, 2, 3심 벌금 300만원(확정)

이한정 - 1심 징역2년(선거법 위반), 징역 1년(공사문서 위조), 2심 징역2년(선거법 위반), 징역6월(공사문서 위조)

임두성 - 1심 벌금 90만원(확정)

정국교 - 1심 징역 3년, 벌금250억원(주가조작), 벌금 1천만원(선거법), 2심 징역3년, 벌금150억원(주가조작), 벌금1천만원(선거법)

정몽준 - 1심 벌금 80만원

정양석 - 1, 2심 벌금 80만원

조전혁 - 1심 벌금 50만원

조정식 - 1심 벌금 70만원(확정)

조진형 - 1심 벌금 80만원(확정)

최구식 - 1, 2심 무죄

최옥철 - 1, 2심 벌금 300만원

현경병 -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홍장표 - 1심 벌금 500만원

홍정욱 - 1심 벌금 80만원, 2심 벌금 30만원

20.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전교조 정치자금법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공정택(당선) 후보가 학원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 등과 재산신고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수사하고, 같은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후보의 선거 자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원한 것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3. 수사 경과

- 2008년 9월 29일, 검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주경복 후보 관련 수사의뢰 받음
- 10월 7일 검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공정택 당선자 수사의뢰받음
- 12월 11일 검찰, 주경복 후보 수사관련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 압수수색
- 12월 15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수사관련 선거사무실과 종로M스쿨 사무실 압수수색
- 12월 16일 검찰, 주경복 후보 수사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영장 청구(18일 기각됨)
- 12월 17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첫 소환
- 12월 19일 검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 12월 22일 검찰, 공정택 당선자 재소환,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5명 자택 압수수색
- 12월 24일 검찰, 주경복 후보 선거자금 불법지원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 12월 30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사무처장 구속영장 재청구. 주경복 후보 첫 소환
- 2009년 1월 1일 법원, 전교조 서울지부장 구속, 사무처장 영장 기각
- 1월 7일 검찰, 주경복 후보 재소환
- 1월 12일 검찰, 서울교육감 선거 중간수사발표

-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주경복 후보를, 9억을 교원단체와 교사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 : 선거비용 불법 지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직국장 구속 기소, 사무처장 등 집행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불구속 기소
- 1월 22일, 검찰, 주경복 후보를 불법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 불구속기소

4. 수사 결과

- 공정택 교육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주경복 후보, 불구속 기소
-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직국장, 구속 기소
- 전교조 사무처장 등 집행위원 6명, 회계책임자, 전교조 서울지부지회장 13명 등 불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공정택 교육감, 1심 재판 유죄 선고
 - : 2009년 3월 10일, 별금 15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용상)
 - :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 :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 명의 차명계좌 보관 4억원 누락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유죄
- 주경복 후보 및 전교조 관계자 재판 진행중

6. 약평

전교조 등의 지원을 받은 주경복 후보관련 수사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당선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대표자격인 공정택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자금을 지원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은 물론 다수의 관계자를 구속시킴으로써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수

사를 넘어선 전교조 탄압을 위한 표적성 수사라는 비판을 초래한 수사임

21.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금품제공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6월)를 앞둔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에 걸쳐 김귀환 의장(당시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전원(28명)에게 3천5백여만 원의 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검사 송규종(주임검사)

3. 수사 경과

- 7월, 검찰, 검찰, 김귀환 의장 구속영장 청구
- 9월 5일, 검찰,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28명 중 4월 국회의원 총선 전에 금품을 받은 25명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총선 후에 금품을 받은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1명에게는 두 혐의 모두 적용)

4. 수사 결과

- 김귀환 의장 구속, 28명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불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김귀환 씨,
: 1심 유죄, 징역 1년6월(총선 전 제공 선거법 위반부분 징역1년, 총선 후 제공 뇌물혐의 징

역 6월), 200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이광만
: 2심 유죄, 징역 1년(총선 전 제공 선거법 위반부분 징역8개월, 총선 후 제공 뇌물혐의 징
역4개월, 2009년 1월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
- 금품을 총선 전에 받은 시의원들(선거법 위반혐의)
: 1심, 벌금 60만~80만 원 등, 추징금 50만~100만 원 등(확정), 2008년 10월 17일, 서울중앙
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이광만
- 금품을 총선 후에 받은 시의원 4명(뇌물수수 혐의)
: 1심, 징역4~8개월 등,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 등, 2008년 10월 17일, 서울중
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이광만
: 2심, 김동훈 시의원,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시의원,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2009년 1월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

22.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2009년 1월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4구역인 한강로 2가의 철거 예정 5층 상가 건물 옥상에
서 농성하던 중 상가세입자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 50여 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소
속 경찰특공대가 강제해산 및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망루)으로 진입하고 농성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불법행위,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

지검장 천성관 - 본부장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년 인사이동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6명,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 수사본부 해체 이후는 안상돈 형사3
부장

3. 수사 경과

- 2009년 1월 20일, 참사발생 당일, 검찰, 수사본부 구성, 농성자 22명 현행범 체포
- 1월 22일 농성자 5명 구속,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소환조사
- 1월 23일 서울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이성규 정보관리부장 소환조사
- 1월 24일 서울경찰청 김수정 차장 소환조사
- 1월 25일 용역업체 본사 및 용산 사무소 압수수색
- 1월 28일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30일 구속)
- 1월 30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압수수색
- 1월 31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용산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 검찰에 제출
- 2월 3일 검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서면조사
- 2월 4일 김 청장 "청장실 무전기 꺼놨었다" 답변서 검찰에 제출, 검찰, 언론이 보도한 '용역업체 경찰 물대포 분사' 등 수사시작
- 2월 5일 수사 결과 발표 9일로 연기
- 2월 6일 용역업체 직원 5명 소환조사
- 2월 8일 농성자 5명 구속기소
- 2월 9일 최종수사결과발표
 - : 농성철거민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이충연 씨 및 입원환자 등)
 - : 경찰, 무혐의처리
 - : 철거용역업체 본부장 등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 농성철거민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6명 수사 계속)
- 용역업체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 재판 진행중

6. 약평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 그 후에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같은 부실 수사 때문에 몇 차례나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수사였음

23.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이적단체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2008년 2월 23일 결성한 조직으로, 혁명적 노동자계급 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을 강령으로 갖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오세철 교수 등을 구속기소하려 한 사건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2부장 이영만

3. 수사 경과

- 2008년 8월 28일 검찰,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됨)
- 11월 17일, 검찰,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재청구(기각됨)
- 12월 4일 경찰, 사건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함
-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사노련 간부들을 모두 소환하겠다고 언론에 밝힘
- 12월 30일 사노련 오세철 운영위원장 소환.

4. 수사 결과

수사 진행중

5. 약평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다수의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려다 실패한 사건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재수사라는 명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일 반적인 상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아울러 검찰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5만여 건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거의 없는 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전형적 사례로, 검찰이 지난 해 검찰창설 60주년을 맞아 마땅히 했어야 할 과거사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한 수사가 지금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임

24.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개요

경남 간디학교의 역사교사인 최 모 씨의 수업교재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증거자료 중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시민궐기문’과 ‘5월의 노래’를 포함하여 논란이 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진주지청장 조주태

3. 수사 경과

- 2008년 7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 10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항의
- 10월, 이적표현물 증거자료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제외시킴

4. 수사 결과

- 불구속 기소

5. 약평

감정의뢰 과정을 보면 경찰청 공안연구소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으로, 검찰의 인식이 구시대적임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임

2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된 민간통일운동의 연대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2008년 9월 27일 아침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연행하여 조사, 검찰이 4

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3. 수사 경과

- 2008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요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씨)(30일, 4명 영장 발부, 1명 기각)
- 10월 24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 구속 기소
- 12월 2일 김승교 공동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추가)

4. 수사 결과

- 일부 구속 기소, 일부 불구속 기소

5. 재판 결과

재판 진행중

6. 약평

단체를 조직하고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한 지 수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적단체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성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했으며, 검찰이 이적행위라고 판단한 이 단체와 구성원들의 활동과 주장중에 일부는 단지 북한과 주장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이는 구시대적인 탄압일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의 존재여부라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한 사건임

3부. 이명박정부 1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중순 사이의 검찰(법무)의 주요 일지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검찰(법무)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시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일지는 한 해 검찰(법무)이 국민의 주목을 받은 것들인 동시에, 검찰(법무)를 평가하는데 빠지면 안 될 기본적 사항들이다.

사건부분은 검찰이 수사한 사건중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 또는 인신구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뽑았으며, 정책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검찰권 행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공식회의나 지휘부의 발언 등을 중심으로 뽑았다.

개별 주요사건 수사	법무검찰 정책
------------	---------

2008. 3. 19

법무장관 ‘불법시위 엄단’ 방침 밝힘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불법집단행동 엄단, 불법폭력집회 주동자와 상습시위자 엄단, 온정적 처리 탈피, 고소고발관계없이 능동적 검찰권 행사, 시위대 검거 경찰에 면책 보장’

‘친시장 법 정비, 행정법규 위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임직원과 기업 양별 규정 완화’

2008. 4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특수1부에 배당

이명박 대통령 사돈 조석래씨가 회장인 효성그룹 계열 효성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2009년 2월까지 수사결론맺지 못함)

2008. 5. 7

검찰총장, ‘광우병 괴담 엄단’ 방침

‘전국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 “거짓과 과장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

2008. 5. 12

대검, 공기업 비리 특별단속 지시

청와대가 공기업 사장 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때에 맞춰 대검(중수부), 공기업 20여 곳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발표 *

11월 수사 종료까지 전체 공기업 및 공공
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3곳, 250명 기소

2008. 5. 26

**법무장관, ‘촛불이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

긴급간부회의, “촛불집회가 정치구호가 난
무하는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 “극렬행위
자뿐 아니라 이를 선동, 배후 조종한 자에
대해 끝까지 검거해 엄정 처리”

2008. 5. 27

대검, ‘촛불시위에 3無원칙 적용’

대검 공안부장(박한철) 주재 공안대책협의
회, ‘촛불시위에 관하여 불법·폭력 집회시
위에 대한 무관용, 무폭력, 무질서 추방의
3無원칙 적용하여 엄격한 법집행 할 것’
결의

2008. 5. 29

**검찰, 신성해운 비자금 관련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 기소**

* 9월 5일, 정상문 전 비서관 1심 무죄 판
결

2008. 5. 30

**검찰,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자
기소**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의원,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등 공천현금 사건 불구속 기소

2008. 6. 8

법무장관, 촛불시위 공동담화문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공동 담화, “불법·폭력시위
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2008. 6. 20

재벌가 2,3세 주가의혹 사건 수사 진 행공개	2008. 6. 20
* LG가 구본호씨 구속(6월 21일), 두산가 4 세 박중원씨 구속기소(8월 18일), 한국도자 기 창업주 손자 김영집씨 구속기소(12월 16 일)	(오전) 법무장관, 조종동 광고불매운 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네이션 수사 지시
* 이명박 대통령 사위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씨 수사결론을 2009년 2월까지 내리 지 않음	(오후) 대검,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네이션 수사 방침 발표("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유해환경 사법 특별단속")

2008. 6. 20

**청와대, 전국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
부 초청만찬**

* 애초 6. 20 개최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정
치적 독립성에 대한 비판 의식해 행사 며
칠 앞두고 취소함

2008. 6. 23

**대검,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유
관기관 대책회의**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 대검 형사1과장/첨
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참
석,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단속·처벌 논의
'인터넷 괴담'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법전담팀 구성, 경찰수사 지휘하
기로 함

2008. 6. 23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개시**

2008. 6. 24

법무장관, ‘광고불매운동 수사강화’

국무회의, “신문 광고 압박을 광고주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

‘인터넷 괴담’ 수사팀장, 부장검사로 격상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 팀장을 부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격상시키고,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배치함. 전국 지검과 지청에 56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가동

2008. 6. 30

검찰총장, “과격시위 주도 세력, 끝까지 책임 물어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

2008. 7. 8

조중동광고불매운동 네티즌 20여명 출국금지

2008. 7. 16

법무장관, 경찰과잉진압 외면

국회 현안질의 답변,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뿐”

2008. 7. 20

해운사 불법로비 관련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구속

2008. 7. 22

법무장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발표

국무총리 주재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원장, 법무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참석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회의,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필요성 밝힘

2008. 7. 28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08. 8. 1

BBK 수사 정영선 검사,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실 2급 행정관 임명됨

2008. 8. 11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국방부 납품
청탁 혐의 구속

2008. 8. 14

대통령 부인 사촌 김옥희 씨 공천명
목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2008. 8. 20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불구
속 기소

2008. 8. 2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

*11월 17일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2008. 8. 29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24명
업무방해 혐의 기소

2008. 8.

창원지검 진주지청, 『대안학교 교사
역사교재에 이적표현물 혐의 적용 기
소

*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 ‘궐기문’, ‘오월의

노래' 등이 이적표현물 증거로 제시된 것

이 비판(2008.10)받자 이를 제외함

2008. 9. 3

법무장관, '경찰폭력 면책' 주장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경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

2008. 9. 6

검찰,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사건 기소

금품 받은 서울시 의원 28명 불구속 기소
(선거법위반 24명, 뇌물수수 혐의 4명)

2008. 9. 8

검찰총장, "던져지는 수사말고 이제
는 우리 수사를 사자"

대검 주례 간부회의

2008. 9. 9

검찰총장, "과잉 표적수사 논란이 없도록 절제되고 품격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배려해야 한다."

수원지검 방문 훈시

2008. 9.

대검,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추진,
언론을 통해 알려짐

2008. 9. 26

검찰, 정동준 한나라당 의원 뉴타운
거짓공약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2009. 1. 5 서울고법 정동준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내림.

검찰, 무혐의처분 내린 서울중앙지검 공안1

부에 재배당함

2008. 9. 2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요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2008. 10. 31

검찰60년 기념식

법무장관 축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공안정국 조성이나 표적수사 운운하며 펼훼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

검찰총장 기념사,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히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2008. 11. 3

법무장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수사 시사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미네르바’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된다는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적에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힘

2008. 11. 4

검찰총장, ‘경제침체 고려 기업수사 자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불필요한 자료는 압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압수한 서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돌려줄 것”, “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수사 진행”

2008. 11. 7

서울중앙지검, 최열 환경재단 대표
관련 환경재단 압수수색

2008. 12. 2

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
평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2008. 12. 3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보조금 횡
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됨)

2008. 12. 29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집회시위 강
경대처' 공언

대통령 업무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법무장관),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
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
(검찰총장)

2009. 1. 2

검찰총장, 신년사

"국법질서를 굳건히 확립함으로써, 경제 위
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
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2009. 1. 7

검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긴급체포 *1월 9일 구속영장청구

2009. 1. 7

PD수첩 담당 검사 사표 제출

PD수첩 사건 주임검사 임수빈 형사2부장,
기소반대 주장하며 지휘부와의 갈등끝에
사표제출. *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에
사건 재배당

2009. 1. 12

**검찰,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정
택 당선자,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간
부 기소**

2009. 1. 20

용산철거민 참사 수사본부 구성

용산철거민 참사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본
부 구성. 검사 8명과 수사관 13명 배치

2009. 1. 21

**검찰, 2005년 여의도 시위농민 사망
사건 경찰 기소중지처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처분을 내림

2009. 2. 9

**용산참사 사건, 경찰책임면제 수사결
과 발표**

최종수사결과 발표. 철거민 농성자 6명 구
속 기소, 철거민 농성자 15명 불구속 기소,
용역업체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과잉진압
관련 경찰 불기소 처분

2009. 2. 11

**‘미네르바 박 씨’ 검찰 발표 최초 수
사시점, 거짓으로 드러남**

2008년 12월 29일에 쓴 글이 범죄혐의 있어 그 이후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동안
검찰이 말했으나, 사실 12월초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음이 밝혀짐

4부. 이명박정부 1년 검찰 평가

〈MB 검찰 1년 평가 1.〉

이명박 정부 검찰 1년, 참여정부 5년과 비교하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하태훈(河泰勳)

I.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집권 1년에 대한 여러 저러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운영 지지도의 추이도 평가에 고려할 중요한 요소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여 대선 득표율의 반절에도 훨씬 못 미치다가 이제 겨우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다는 지지자 가운데 3분의 1은 지금 선거를 다시 하면 이 대통령을 찍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자가 잘한다는 응답자의 거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 thù지’로 대변되는 인수위 활동과 취임 직후 ‘강부자’, ‘고소영’으로 특징지워지는 장관 임명 등에서 국민의 실망이 시작되었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바닥 낮은 줄 모르게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불법, 좌파,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며 공권력을 이용해 눌러가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지지도는 오를 줄 모르고 답보상태다. 지난 1년은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그나마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 같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는 경찰력과 물대포, 그리고 이른바 ‘명박산성’만이 청와대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형국이었다. 마치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권력이 위태로워질 것이 두려워 안간힘으로 막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정권투쟁으로 간주하고 강경대응을 선포하더니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투입한 성급하고 과도한 공권력이 급기야 용산참사를 낳았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의한 철거민 사망에 검찰이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정권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봄이 오는 소리에 맞추어 커져갈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 1년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1년 내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지탱한 힘으로 자주 등장하기는 했지만 우선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 짧은 시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그 평가의 주요 기준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인데

이는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했는지, 검찰 수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등은 평가자가 누구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기간은 짧더라도 그 동안 검찰에 의해 무수히 많은 사건이 형사사건화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검찰을 평가할 수 있겠다. 촛불집회, PD수첩,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공기업비리, 정연주 KBS 사장 배임혐의 사건, 미네르바, 용산참사 등등등.

이 글에서는 비교적 손쉬운 비교방법을 통하여 검찰조직과 임무수행의 일관성을 중요한 척도로 삼아 이명박 정부 1년의 검찰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 과거 참여정부 5년 동안의 검찰과 이명박 정부의 검찰 1년을 비교하면서 적어도 검찰이 정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어떤 시기의 검찰이 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는지는 평가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처럼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 서로 상반되는 시기의 검찰이 그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매우 정치적 영향 하에서 검찰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기의 검찰이 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누구든 검찰조직과 임무는 동일한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나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누구나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사건이 어느 정권에서는 수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권에서는 수사조차 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법집행의 일관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09년 신년사에 법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검찰수사의 일관성과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이 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 일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반응 및 지시사항,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일관성의 잣대로서 수사의 일관성과 검찰 태도의 일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평검사

1. 참여정부의 검찰총장과 평검사

6년 전을 되돌아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직후에 가졌던 전국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방안에 관한 논쟁을 벌이며 젊은 검사들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을 호기스레 외치며 비판의 날을 세웠었다.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호통 치던 객기도 보여 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두율 교수에 대한 폭용력이 필요함을 꾀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송두율 교수를 구속했다. 그리고 2005년 10월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에 반발하여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여준 사건들이다.

2. 지난 1년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지난 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약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을 정치검찰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대선기간동안 본인에 대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의해 여론이 좌우지 됐던 경험에서 검찰의 정치개입의 문제점을 실감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과는 달리 촛불시위나 용산참사 등에 관한 발언에서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 여러 사건에서 검찰수사에 앞 서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발언을 삼가지 않았다. ‘폐법’이 없으면 GDP가 상승할 것이라는 진단으로 마치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의 책임이 촛불집회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인터넷이 독일 수 있다고 역기능을 얘기하자 권력기관이 앞 다투어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까지 세무조사 운운하며 대통령을 거들었다. 대기업인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다며 건강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발언도 주저함이 없었다.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시위를 보며 자책했다던 대통령은 유모차부대를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인 아동보호법 운운하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용산참사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청장 문책여론에 대해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만 묻는다면 위기상황에서 누가 일 하겠는가.”라고 발언했고, 검찰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의도에 역행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고, 실제 그에 부응하는 수사결과를 내 놓았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추어 2008년 취임사에서 경제살리기와 법질서확립을 빼놓지 않았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불법집단행동으로 보고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익세력에 대해 엄정 대처를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형사범죄시하는 무식함을 드러냈다. 과격시위의 배후에 좌파단체나 체제전복세력이 있다는 발언은

7,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다. 이는 우편향의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발언이었다. 이는 대통령, 여당 등 정치권과 동일한 시각으로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법무부장관이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자 대검에서 특별단속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이버 여론 단속을 위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전산·방송통신직 200명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주고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할 방침도 밝혀 대통령의 의중을 앞질러 살피고 검찰권을 통치권의 주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은 지난 정부때와는 달리 아무 저항 없이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 발 앞서가고 평검사들은 코드 맞추기에 부산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말없이 복종할 뿐이었다. 특히 수사 인력이 모자라 쪄쩔 맨다면서도 검사를 5명씩이나 투입하여 PD수첩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사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고, 인터넷 광고 안 실기 운동의 불법성을 수사한다며 전국의 형사 부장검사를 모아놓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기 사람으로 심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는 공기업사장이나 연구원장의 비리 캐기 수사에 정치적으로 검찰이 동원되기도 했다.

3. 참여정부의 검찰총장과 이명박 정부 1년의 검찰총장

검찰총장의 이중성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은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면 곧바로 절제와 품격을 버리고 불법필벌을 외치며 법률을 들이대며 친북좌익세력이라거나 반질서사범으로 낙인찍어 수사대상으로 구속하여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냈다.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는 구호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2008.10)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향할 미래를 언급하면서 이에 관하여 한 마디도 없었다. 마무리 발언에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 치열한 고민과 불굴의 의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말했을 뿐이다.

검찰총장은 2009년 신년사에서는 국법질서 확립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회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검찰권 행사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와 경제위기 극복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발언으로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부응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권이 대통령의 정책실현의 도구로 동원될 수 있음을 내놓고 드러낸 것이다. 특히 공기업 비리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검찰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정치적 압력에 의한 무리한 수사착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III. 일관성이 결여된 검찰수사와 검찰의 태도

1.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

국민은 6년 전의 젊은 검사들로부터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중견 검사로 검찰의 중추에 해당한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가. 6년 전의 젊은 검사에 해당하는 지금의 젊은 검사들은 이 상황에서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지난 6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앞에 선 검찰은 어떠한가.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큰 검찰’이 아니라 권력 앞에 나약해진 ‘작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면수사, 끝까지 추적수사 등 겁나는 단어를 열거하며 언론에 등장하는 비장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왜소해진 검사들만 보일 뿐이다. 지난 정부때처럼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에게 반기를 든 검찰총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2. 검찰수사의 일관성

지난 1년의 검찰수사의 특징은 선입견 수사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직간접의 수사관여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미리 수사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수사였다. 촛불시위나 철거민이 생존권 사수시위는 폐법이며 불법이고 이에 대한 공권력행사는 적법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불공정 수사일 수밖에 없었고 균형감각을 상실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예로서 용산참사의 경우 용역업체의 폭력성이나 무리한 공권력투입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철거민의 폭력만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을 들 수 있다. 검찰총장의 불법필벌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좌파나 친북세력으로 낙인찍어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수사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 표적수사가 되는 것이다. 용산철거민 강제진압에 따른 참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진압 당시에 용역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언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뒤늦게 허둥대며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수사의 또 다른 특징은 경찰수사의 지휘권자가 아니라 경찰수사를 뒤처리하는 수사였다. 촛불집회나 용산참사 수사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더 정치적 영향 하에 놓여있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추인하는 모습은 수사지휘권자로서의 지위, 기소권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지난 1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수사로 일관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연주 KBS사장 배임죄수사다. 정권의 퇴진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정략적이고 무리한 수사임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표적수사의혹도 끊이질 않았다. 그 예가 미네르바 박씨 사건 수사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시점(2008년 12월 29일에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게시된 시점)에 관한 검찰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던 그를 처벌하기 위해 벌인 표적 수사를 감추었던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미네르바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마약 조직범죄수사부가 체포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지난 해 12월 29일 쓴 한 편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5부에서는 문제의 글이 나오기 약 한 달 전인 12월 초부터 '미네르바 박 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신원도 파악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 박 씨'와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수사와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고, 곧이어 검찰총장도 인터넷을 통해 경제에 혼란을 끼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과연 참여정부때의 검사라면 미네르바, PD수첩, 용산참사 수사가 이러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및 이념적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IV.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법질서 준수와 법치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권력 투입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법치주의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다. 법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형사법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피해'가 있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혀 경찰의 폭력 행사를 부추긴

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경찰력으로 진압하고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은 법치훼손의 결정판이다.

V. 과거사도 반성하지 않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지난 2008년 10월 검찰은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성대히 기념식도 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검찰이 기억해야 할 20대 사건도 발표했지만 진정으로 축하하고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60주년은 도래했으나 국민들은 검찰이 축하받을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지난 10여 년간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검찰 내외의 노력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정치적 편향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검찰이 미워서 축하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검찰 60년을 총평하자면 '인권옹호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라는 칭호는 과분하다. 검찰이 선정한 20대 사건에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이 제 기능을 다했는가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들어있다. 태영호 납부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서울지검 검사 피의자 폭행사사건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재심무죄사건과 간첩조작과 같은 재심의 대상이어야 할 사건들이 인권옹호기관이라 불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불법구금과 고문폭행의 방조자, 정치권력의 도구 등등의 오명이 감히 인권의 보루로서 검찰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한다. 과거를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과거의 낙인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진정 준사법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려면 더 이상 과거사정리에 방관자여서는 안 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기관의 과거사정리가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편승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모르쇠'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인권유린 및 조작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기소했던 검찰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내부적 진상규명 노력도 없었고 타 기관에 의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이 적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공식적인 과거사 반성도 없었다. 그 간 법원에서 밝혀진 7건의 재심무죄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한마디 반응도 없었던 것은 정의실현을 위한 진실발견의 한 축임을 포기한 셈이다. 그래서 더 이상 준사법기관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인권수호기관이라 자부할 수도 없다. 그때 그 일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소관이었기에 검찰로서는 역부족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 불법구금과 고문은 수사경찰이 자행한 일이라고 눈감아 버릴 수도 없다. 그 당시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었고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였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권력도 만만치 않았던 시절의 일이 아닌가. 유죄판단은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몫이었으므로 검찰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항변도 조서재판의 관행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검찰이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수사경찰의 폭행과 고문을 폭로하는 피의자의 절규와 양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경찰수사에 적극 가담하거나 억지 증거를 들이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건도 있다. 이 모두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불법이 자행되던 유신시대와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어 벌어진 일이다. 법이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듯 검찰도 때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수족임을 자인하였다.

검찰이 과거사 정리에 소홀한 것도 그렇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동안 뜼했던 정치검찰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린다는 사실이다. 많은 국민에게는 묵묵히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에 봉사하는 검찰로 비춰진다. 또 다시 그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위기다. 검찰과 법무부가 바닥 모르게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욕과 회한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 60주년을 맞아 검찰은 과거 검찰권행사에 오류가 없었는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국가공권력이 권위를 갖게 된다. 어두운 과거를 덮어두거나 이를 파헤치는데 주저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단절될 수도 없다. 검찰이 기억하기 싫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년 이명박 정부가 과거청산에 급급했던 상황 아래서 역사의식이 있는 검찰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VI. 위계질서의 공고화로 정치적 영향가능성이 커진 검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검찰사무에 관여하게 되면 검찰조직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검사는 한 몸이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뱉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시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명령의 부당함이 보여도 묵묵히 땡글 뿐이다. 자신의 앞날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조직의 보스가 정치적이면 다들 정치적이 된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의 무기력한 검찰조직을 보고 있다. 내부의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PD수첩 수사의 담당부장검사가 상사와는 다른 목소리를 인정받지 못하자 검찰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계질서의 조직이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기능을 제압하고자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수사담당 주임검사였던 부장검사의 무혐의 처리 의견을 묵살하여 결국 10여년 중견간부로 경험을 쌓았을 한 부장검사를 조직 밖으로 밀어내친 조직이 검찰조직이다. 이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해 준 사건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권으로 위계질서의 조직을 장악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자들이 중용되고 승진된다. 지금은 공안검찰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찰인사에서 알 수 있다.

여전한 청와대와 검찰과의 연결 끈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요소다. 보이지 않게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이 늘 수상하다. 이것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민정수석비서관을 전직 검사출신으로 둠으로써 그 끈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듦다.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검사도 있다. 물론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현직 검사의 파견이 금지되어 있어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지만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을 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VII. 나가며

우리는 일관된 검찰을 보고 싶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는 검찰을 보고 싶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뀔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새 정권에 코드를 맞춘 검사들은 결국 검찰조직에 오래 몸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6년 전처럼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들을 보고 싶다. 그런 검찰이라면 정치권이 눈치를 주더라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하는 비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법현실에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법이 정치적 지배의 도구나 기득권 옹호장치로 쓰였던 시대를 한참 지나왔다고 생각했다. 검찰도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로 어느 정도 중립성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과 공권력, 검찰권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할 위기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지지를 위해서 개인의 인권쯤이야 희생되어도 좋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확산이 우려된다.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외치는 ‘법대로’, ‘법치’가 위압수단으로 들린다. 법과 질서만

외치다 보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필수적이다. 다른 목소리를 ‘국론분열’이니 ‘사회혼란세력’으로 낙인찍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눌러버린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법치국가와 법은 통제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다. 또 다시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지난 1년을 성찰하고 정신을 차릴 것인가. MB 검찰 1년, 그 기로에 서 있다. □

〈MB 검찰 1년 평가 2.〉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안통치의 부활

서보학(경희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1. 현상의 총괄적 진단

지난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후 1년간 검찰이 보인 행태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거 10년간의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법집행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변모하였을 것이라는 소망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기대와는 달리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적 예속성은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되고 있다. 과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누었던 기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¹⁾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정권안보기구를 자임하면서 그 역할에 몰입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부패범죄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을 공평무사하게 사법처리하여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임무 역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와 다양한 국가권력의 횡포·불법행위로 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히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질서 확립을 앞세우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아도 지난 1년간 검찰은 광우병 위협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엄정·신속한 사법처리, 정연주 前KBS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 저인망식의 대대적인 공기업비리 수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의 부활 등으로 이미 정치권력에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前청와대비서진들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수사, 신성해운 로비의혹 수사, 농협의 휴켐스 혐

1) 한 예로 지난 200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PA) 총회에서 당시 대검중수부 대선자금 수사팀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계속된 대선자금 수사에서 천억 원대에 가까운 불법정치자금의 실체가 밝혀졌고 여·야 정치인 및 기업인 50여명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 과정에서 편파수사의 시비도 있었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 선거캠프의 불법자금도 법의 심판을 피해 가지는 못 했다. 한국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기개와 강단을 과시한 대선자금 수사팀의 공로가 수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모처럼의 소신수사로 당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 사실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달라진 검찰의 모습에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값매각의혹 수사, 부산자원 특혜대출의혹 수사, 강원랜드 수사 등도 前정권의 실세를 겨냥한 수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라졌던 검찰을 동원한 前정권사정의 악습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숨겨진 비리를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現정부의 무리한 정책집행을 뒷받침하거나 정국장악을 위한 목적의 前정권·야당사정에 검찰이 ‘권력의 칼’로 동원되는 경우 검찰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인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 유한열 前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군납비리사건,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사건 등에서는 검찰이 매우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 대선자금수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과거의 당당한 모습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수사도 계속 논란거리다. 전부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다.

검찰의 정치예속화와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앞세운 검찰권의 전방위적 활약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사상·인권·노동·사법 분야 등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던 우리 사회가 다시 20년 전으로 회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해석·적용·집행하는 법원과 검찰·경찰을 포함²⁾ -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치나 금력이 법위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법의 형식을 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집행기관인 검찰 단계에서 법규범의 해석이 왜곡되고 집행권한이 남용될 때 우리사회 법치주의의 모습은 심히 일그러지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법수호의 최후보루인 법원조차도 오늘날에는 경제권력 앞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인신구속에 신중하고 시민들의 집회시위기본권을 판단함에 있어 정치적 의풍을 덜 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2009년의 현실은 그나마 진보적이었던 과거 10년 정권하에서 검찰 개혁에 철저하지 못했던 업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한 일이 전무했다. 참여정부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검찰조직을 둘러싼 본질적인 내·외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하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이 처리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그리고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MB검찰의 1년 활동을 평가해 본다.

2) 또 다른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지난 1년간 보인 행보도 결코 검찰에 뒤지지 않는다. ‘폐법 청산’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은 뒷전으로 한 채 시국치안에 열을 올렸다. 국민적 의사표출이자 저항권의 행사였던 촛불시위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창과 방패, 죄루액, 물대포 등으로 무장한 진압경찰은 대통령과 국민을 ‘명박산성’으로 갈라놓았듯 집권층과 국민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정부정책에 발맞춘 이러한 강경기조가 결국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잉태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민주주의의 후퇴

작년 MB정권의 출범과 함께 공직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각종 위원회, 각종 직능단체·관변단체의 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도 물갈이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소위 진보·좌파의 색깔을 지우고 대선 공신들로 하여금 보수·우파의 색깔을 물들이도록 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MB정권이 가장 주목한 것이 언론사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방송장악 나아가 언론장악이 보수정권 연장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MB정부는 대다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YTN과 KBS에 낙하산 인사를 감행함으로써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가시화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해당 언론사 내부의 내홍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MB정권의 언론사 장악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2일 정연주 前KBS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뒤 8월 20일 재판에 회부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정연주 前사장이 재직 때인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이긴 뒤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중재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하여, 회사가 실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인 2천 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였고 유명 로펌의 법률자문과 수용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KBS의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에 의해 승인된 KBS 사장의 조정수용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걸어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 KBS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과세관청에 의해 새로운 부과처분이 가능해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 된다면 그러한 조정을 권고한 항소법원 재판부에게는 배임을 교사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정연주 前KBS 사장에게는 1,892억에 달하는 국가의 세금 낭비를 막고 국고를 불려준 공로로 표창을 수여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정연주 前KBS 사장이 통합방송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압력에 굽하지 않자 검찰이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 기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해결사로 나선 느낌이다. 법적인 시시비비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검찰로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MB정권의 언론탄압에 검찰이 총대를 멘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이다. 민주사회의 건강성은 행정권력에 대한 언론의 다각도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이 가능할 때 지켜지는 법이다. 성급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에 직면해 언론이 이러한 개방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보도한 것은 언론 본연의 당연한 사명이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상황에서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자세히 보도한 것은 그나마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MB정부는 MBC PD수첩의 보도가 대대적인 국민저항운동인 촛불집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고, PD수첩의 보도가 왜곡된 내용으로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MBC PD수첩측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관련자들이 검찰출두를 거부하자 검찰은 작년 7월 2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의 보도에 19곳의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기존 농림부측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MBC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 이후 수사진행이 지지부진 하던 중 올해 들어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하기는 하였지만 농립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결국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정치권의 지휘를 받는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진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애당초 MB정부의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에 검찰이 무리하게 나섰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평해도 좋을 것이다.

이같이 MB정부는 오프라인상에서 언론을 길들이고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상에서도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그 공세의 대상은 MB정부의 정책이나 보수언론의 논조에 대해 비판을 쏟아 내는 네티즌들이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기소’와 인터넷공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우던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구속’이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기소’는 광우병과 관련한 촛불시위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조·중·동 신문에 대해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벌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수사, 작년 8월 29일 네티즌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판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해 빙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2월 11일 전국의 법대교수와 변호사 80명이 소비자불매 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탄원서에서 법률가들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나라는 없으며” 또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라고 지적했다.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주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검찰은 시민들이 소비자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직접 전화를 한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도 밝히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법이론적으로도 큰 무리가 있는 기소임을 드러냈다. 앞의 탄원서를 제출한 많은 법률가들이 검찰의 기소를 ‘기소모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언론의 돈벌이를 지켜주기 위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업무방해로 규정짓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형벌의 굴레로 제약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 주권의 행사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익히 알고 있는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수사와 구속은 우리국가의 품격을 삼류로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건이다. MB정부와 검찰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익을 해하고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을 접한 대다수 시민들은 인터넷 상 논객 한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정부가 전쟁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상황 앞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말았다.³⁾ 국민들이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 그리고 수많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말보다는 전문대를 나온 한 실직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현상, 즉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현상에 대한 책임이 가벼운 말과 정책의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미네르바 한 사람이 현란한 말로 몽매한 대중을 현혹한데에 있다고 믿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인터넷에 제시되는 수많은 의견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 신뢰할 만한 의견을 선택·추천하는 것은 현명한 네티즌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정부와 검찰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공지가 공익을 해하고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그 동안 대통령과 장관이 보여준 수많은 실언과 정책실패는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통신법 위반여부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도, 당국자가 구두로 외환매수 자제를 요청했으나 공문으로는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미네르바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되는 것인지? 우수한 두뇌들이 모인 검찰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분간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본보기로 미네르바를 구속

3) 작년 2008.11.3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집권여당의 청부에 의한 수사지시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여 비판적인 인터넷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는다면 참으로 우둔한 머리에서 나온 실책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언로가 열려 있고 비판 여론의 자유로운 제기가 가능한 상태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MB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경제성장만이 선진사회를 징표하는 표지(標識)가 될 수는 없다.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와 함께 인권, 자유, 평등, 복지 등 인간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성장하고 보장되는 사회가 선진사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우리사회의 품격을 ‘저급함’으로 떨어뜨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을 넘어 이제 사이버상의 공간이 국민여론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논의의 마당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여론을 옥죄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독재국가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나 인터넷상에서의 모욕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MB정부의 이러한 언론탄압과 비판언론 잠재우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 언론과의 치열한 논의대신 형사처벌을 앞세워 무조건 입을 막으려는 법만능주의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법치주의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인권의 후퇴

인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MB정부가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앞세우면서 민주사회·선진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가치들을 경시하는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는 징후는 매우 노골적이다. 인수위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돌리려고 한 시도가 그것이었고 이후에는 인권비전문가와 심지어 반인권적 전력을 가진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에 임명하여 비판을 자초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30% 줄이는 방침을 확정해,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시절을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룩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권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경시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함부로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규범이 표방·보호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인권이라면 오히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인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

이다.

MB정부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반인권적·인권무시적 태도는 검찰의 법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외친 결과, 작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기소를 진행하면서도 과잉·폭력적 진압으로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또한 시민 5명과 진압경관 1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농성참가자들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는 엄정하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및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경찰의 법집행에 불법은 없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반인권적 수사행태이다. 비판적 네티즌들에 대한 본보기 구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네르바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로 13시간 이상을 조사받은 적도 있다고 하여 우리 검사들의 인권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정도면 신문(訊問)이 아니라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년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재독학자 송두율 사건에서 현법재판소가 검찰신문과정에서 피의자를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신문관행이 검찰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허한 약속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한편 같은 기념식사에서 검찰총장은 “국법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루뭉술한 언급 외에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을 기소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던 많은 과거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과거사로서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만 해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강대광 간첩조작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합주명 간첩조작 사건,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등이 있고, 이 사건들에 관련된 총 3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집행된 사람만 9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들이 법원의 재심에 넘겨

져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건들에서 검찰은 직접 인권침해를 했거나 경찰·정보기관의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했거나 허위조작된 증거들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회부한 악역을 담당했었다. 검찰이 행한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어찌 국법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다보니 부득이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로 치부될 수 있겠는가? 이는 작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자기반성을 이야기 한 것과도 비교된다.

무엇이든 새로운 출발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사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피해자와의 화해도 가해자의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부끄러운 인권침해행위들에 대해 참회를 모르고 상황윤리만을 앞세우는 검찰이 과연 앞으로도 인권수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MB정권의 출범이후 권력과 가진 자의 편에서 서서 약한 자와 없는 자들을 형벌이라는 무기로 토끼몰이 하듯 펫박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염치를 모르는 기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의 법집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권의 후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4. 공안통치의 부활

MB정부는 경제회복을 통한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줄 곳 '국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낮은 이유가 첫째는 미약한 준법의식, 둘째는 노사문화, 셋째는 북한이라고 말한 점이나 "'폐법'만 없어도 GDP가 1% 이상 성장한다"고 주장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선진국의 진입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체현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폐법'정서에 기대어 집회시위를 일삼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있다는 투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아직 '강한 법' '강한 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는 투이다. 어려워진 경제현실과 정책실패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반대목소리를 단호한 법집행과 중한 처벌로 대처하겠다는 계산된 발언이라 할 수 있겠다. 집권여당이 안면을 가린 집회시위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소위 '마스크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회시위의 주최측에게 심각한 재산적 타격을 주겠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약자 및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 그리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정당간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법’만이 ‘정당한 법’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먼저 국민들을 향한 설득노력과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꿀찌’라는 격언은 그래서 있는 말이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만을 전방위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법치주의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사안에서 오로지 반대 목소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강한 법’ ‘강한 법집행’만을 주문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은 차라리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법무부와 검찰은 이러한 대통령의 법인식을 법무행정과 검찰권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맞장구를 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불법필벌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을 위해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에서 더 나아가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펴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우리 사회의 친북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라졌다 고 믿었던 공안통치가 예고된 것이다.

올해 검찰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시절 사라졌던 공안3과를 부활시켰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격상·정례화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등 공안파트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방안을 담은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서는 관용 및 면책의 방침을 밝혀 경찰의 강력한 집회시위진압을 독려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여론통제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200명의 전산직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작년 8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공안기관에서 반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가 기지개를 평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분단보다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대결보다는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동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친북좌익이나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공안당국의 탄압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일까? 미네르바의 구속이후 인터넷 상의 논객들이 국외탈출을 감행하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탓일까?

역사발전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MB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검찰이 편승하여 스스로의 권력 확장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의 엄중한

선언을 잊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주권자인 국민을 단순한 통치의 객체로 펼 하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는 정부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거쳐 오면서 우리사회 및 우리국민들이 쌓아온 민주화의 내공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성숙한 국민들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 받들고 본 받을 대상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대통령과 검찰에게 공히.

5. MB검찰 1년의 총평

앞서 본 바와 같이 MB검찰의 지난 1년은 실망 그 자체였다. MB정부가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며 공안통치를 강화해 나가는데 검찰이 충실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참여정부가 한 가장 큰 정치적 결단 중의 하나가 검찰을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이었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검찰권력의 과잉화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을 표방했기 때문에 집권기간 내내 양자 간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었다. 당시 검찰의 칼끝이 야당 보다는 오히려 집권세력을 겨냥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가 된다.

반면 MB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부에서 끊어졌던 ‘政 · 檢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새정부에서는 소위 ‘삼성떡값’으로 위기를 맞았던 현재의 검찰수뇌부와 대선과정에서 BBK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현정부의 집권세력이 서로의 안전을 담보해 주면서 공생의 길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좌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불편부당하고 성역 없는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권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검사의 출현이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력보다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집권세력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기대난망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우리 검찰에 쏟아졌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정적탄압 및 정국장악의 도구’ ‘인권침해 기관’이라는 오명을 현재의 검찰이 다시 뒤집어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경제규모 13위의 수준에 걸 맞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 ‘민주화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갖고 싶다.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낙후된 정치수준에 검찰이 동반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향후 검찰 구성원들의 반성과 분발 그리고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